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0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이용우 · 맹성규 · 박 정
장철민 · 이주희 · 김태선
김남희 · 정혜경 · 이학영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44조(벌칙) ----- -----. <u><단서 삭제></u> <u><삭 제></u> <u><삭 제></u>

<u>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u> <u>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u> <u>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u> <u>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u> <u>한 자</u> <u>3. · 4. (생 략)</u>	<u>1. · 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u> <u>같음)</u>
--	---